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2015. 2. .
발 의 자	안장환 의원 외 10명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5. 2. .

발 의 자 : 안장환·김상조·김인배·김재상
김정곤·박교상·윤영철·윤종호
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에 따라 내용을 개정하고, 용어정리,
오·탈자 수정 등으로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나. 상위법 변경(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8조제2항, 안 제12조, 안 제27조)

- 「수질환경보전법」,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건설업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다.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개정(제명, 안 제1조~제12조, 안 제14조~ 제17조, 안 제19~제24조, 안 제26~2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관련 : 해당없음

다. 부서의견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식[별표 1~3, 별지 1~6]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를 “구미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규정에 의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농공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를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으로, “부담에 관하여”를 “부담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이하 “오·폐수”이라 한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폐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오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우수를 제외한 오·폐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처리자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처리”를 “처리장에서 오·폐수처리”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 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거 농공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조 중 “폐수나 생활오수”를 “오·폐수”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폐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수설비를폐수관거”를 “배수설비를 폐수관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량계 및 PH계등)”을 “(유량계 및 pH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를 “검·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PH계, 수질측정계등을”을 “pH계, 수질측정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유지차단장치”를 “유입차단장치”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폐수 및 생활오수”를 “오·폐수”로, “배수 7일전[별지제2호서식]”을 “배수개시 3일전[별지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공지구내”를 “농공단지 내”로, ““사업자”라”를 ““최초사업자”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20일 이내에[별지제3호서식]에 의거”를 “30일 이내에[별지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실적사료”를 “실적자료”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을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사업자”를 “② 사업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오수배출업소”를 “오·폐수배출업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종업원수등을”을 “종업원수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액등”을 “감액 등”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용수사용량등을”을 “용수사용량 등을”로 한다.

제2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로 한다.

제26조 중 “발부”를 각각 “발급”으로, “발부일”을 “발급일”로 한다.

제27조 중 “의거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을 “따라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의 규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29조 중 “의하여 취득전”을 “따라 취득 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의한 배수설비 설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PH계 등 이 규정에 의한”을 “다른 배수설비 설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pH계 등 이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부담금”을 “비용부담금”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서식 별표 1 ~ 3, 별지 제1호 서식 ~ 6호 서식 사항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 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질환경 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규 정에 의거</u> 구미시 관내의 <u>농공 지구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하 “처리장”이라 한다)</u> 의 운 영 및 비용 <u>부담에 관하여</u>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48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 라 -- <u>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u> ----- ----- 부담에-----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장)라 함은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 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장</u>)를 말한다.	2. <u>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 (이하 “오·폐수”이라 한 다)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u>
3. <u>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 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 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u>	3. ----- ----- <u>오·폐수</u> ----- ----- -----.
4. <u>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u>	4. -----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제외
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
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자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처리에 소
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
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
(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생 략)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
리구역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
진법에 의거 농공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시장은
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환경관
리공단이나 전문기관에 위탁관
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
·폐수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제5조(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
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
여 한다.

----- 우수를 제외
한 오·폐수-----

-----.

5. ----- 처리장에서
오·폐수처리-----
----- 그 밖의 -----

-----.

6. (현행과 같음)

제3조(처리구역)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
-----.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

-----.

제5조(폐수등의 배출) -----
----- 오·폐수-----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배수설비를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면허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

-- 오·폐수-----

- 따른 -----

--. ----- 따

른 -----

-----.

②----- 따른 -----

----- 따

른 -----

-----.

③배수설비를 폐수관거-----

-----.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

----- 각 호-----

---.

1. ~ 6. (현행과 같음)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

----- 해당 ---

-----.

②----- 「건설산업

기본법」-----

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등) ①·②
(생 략)

③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위하여 동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0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

-----.

제9조(유량계 및 pH계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검·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

④-----
----- pH
계, 수질측정계 등을 -----
-----.

⑤-----

----- 유입차단장치-----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

----- 오·폐수

배수개시 3일전[별지제2호서식]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
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 항목중 BOD, SS이외의 항
목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
는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
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1. 농공지구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생략)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비의 산출기준은[별표1]과 같다.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
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
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
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

제12조(배수기준)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
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 대해서-----
-----.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농공단지 내-----

----- “최초사업자” 라
--

2. (현행과 같음)

②----- 따른 -----
-----.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
고) -----

----- 30일
이내에[별지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설치비 부과)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이내에 제1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게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납부대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

② (생략)

③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의거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소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

-----.

제16조(시설설치비 부과) ① ----

----- -

--- 따른 -----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

-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실적 자료-----

-----.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따

한 유지관리비를 시장을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당해월의 유지관리비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자에게[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생략)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생략)

② 제9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등을 기준으로 추

른-----
-----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

- 따라 ----- . ② 사업
자----- 따른 ----

--- .

제21조(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현행과 같음)
2. ----- 따라-- -----
----- 오·폐수배출업소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해서-----
- 종업원수 등을 -----

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③비용부담금 감액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등을 기준으로 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부담금의 추정) 소장은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

-----.

③----- 감액 등-----

그 밖에 -----
---- 대해서-----
----- 용수사용량 등을 -----

-----.

제23조(부담금의 추정) -----
----- 따른 -----

-----.

제2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

-----.

③-----

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제26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정한다.

제27조(채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시장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
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
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
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
무를 승계한다.

제31조(배수설비등 시설설치 의무)

대해서

_____.

제26조(독촉)

--- 발급

발급일

— — — ●

제27조(체납처분)

----- 따라 시
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의 규
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

— — ●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 따라 취득 전

_____.

제31조(배수설비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PH계 등이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불이행) ① -----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pH계 등이 규정에 따른 -----

 -----.

② -----

 ----- 비용부
담금-----

 ----- 따른다.

【별표 1】

시 설 설 치 비 의 산 출 기 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시설설치비

(1) 부담기준 : 전체부지 면적에 분양 부지면적으로 한다.(3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2) 산출근거

$$\bullet \text{ As} = \text{Fc} \times \text{KI} / \text{KT}$$

- As : 업소부담금액

- Fc : 용자금액(이자포함)의 110% 해당액

- KI : 처리장 준공 시 업소별 총 분양 부지면적

- KT : 처리장 준공 시 총 분양 부지면적

◦ 증설업자의 증설사업비(폐수배출업체만 해당)

$$\bullet \text{ As} = \text{Fc} \times \text{Li} / \text{LT}$$

- As : 비용부담자가 분기별 또는 매년 부담하여야 할 개별부담금

- Fc : 용자금액(이자포함)의 110퍼센트 해당액

- LT : 설계 오염부하량

- Li : 증설 오염부하량 = BOD부하 + COD부하 / 2 + 1.3SS부하

◦ 오염부하량 산출방법

- 공동 폐수종말처리장 준공당시 배출시설 허가증에 신고 된 예상 최대 오염 부하량을
기준해서 산정

설 계 오 염 부 하 량 (LT)

업체명 구분	폐수량	농도(mg/ ℓ)			오염부하량(mg/ ℓ)		
		BOD	COD	SS	BOD·SS평균	SS (1.3×SS)	계
계	368.0						104.7
구미협동식품	190.0	279.6	205	97	15.5	11.4	26.7
(주)청우식품	44.0	1,000	400	350	5.1	3.8	8.9
(주)월드비전	104.0	0.9	2.5	0.4	32.6	34.7	67.3
선산식품	30.0	730	680	360	0.9	0.7	1.6

【별표 2】

유지 관리비 산출 기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circ \text{ As} = 0.2\text{M} \frac{\text{KI}}{\text{KT}} + 1.8\text{M} \frac{\text{QOI}}{\text{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s : 업소 부담금액
- [직접경비 + 간접경비(직접경비의 10%) + 감가상각비(1,322,000원)]
-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업체별 부지분양면적 별표 3 참조)
- KI : 개별업소부지면적분양 부지면적
- QQT : 총 오·폐수배출 오염부하량
 폐수 : $BOD+COD+SS/2$
 오수 : $BOD+SS$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오염부하량
 폐수 : $BOD+COD \ 2+SS$
 오수 : $BOD+SS$

【例 3】

고아농공단지 업체별 분양면적

[illegible]

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신 청 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사 업 장 명 칭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 공사실시 설명서
 -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 폐수 맨홀 복구 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 공정도 1통
-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별지 제2호서식]

배 수 설 비 사 용 개 시 신 고 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명 칭				
사 업 장 소 재 지				
업 종				
설 치 완 료 예 정 일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설 치 비 부 담 대 상 신 고 서		
신 고 인	상 호 또 는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배 수 설 비 사 용 개 시 일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 1통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설 치 비
(분기) 부담금 납부 고지서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부담근거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구미시 농공단지 사업소장 폐수종말처리장	

영 수 증
(분기) 시설 설치비 상환금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구미시장 귀하	

영 수 증
(분기) 시설 설치비 상환금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부담근거			
수량	BOD	COD	SS
m ³ /일	mg/ℓ	mg/ℓ	mg/ℓ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소장			

영 수 증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영수증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구 미 시 장 귀하	

영수필 통지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독촉장				
상 호		성명(대표자)		
주 소				
구 분		체납금액		
		계	부담금	가산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인)				
구미시장 귀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을 받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 지소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
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
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
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
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
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30.]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
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
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